

자체점검 보고서 법률 개정에 따른 안내

『법조문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』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
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

개 정 전	개 정 후
<p>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<u>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<u>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</u></p>

○ 법조문에 관계인이 제출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.

- 제 출 자 : 점검업체 혹은 관계인(기존과 동일)
- 변경사항 : 자체점검 제출서식에 관계인 서명 또는 인이 필수로 바뀜

『자체점검(종합정밀점검·작동기능점검) 안내사항』

자체점검의	소방시설등을 <u>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</u> 를 점검하는 것
점검횟수	연 1회 이상(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1년 주기 적절성 확인)
점검시기	<u>건축물 사용승인일 속한 달까지 실시</u> 예)사용승인일 : 2016.10.1. → 2016. 10월까지 점검 실시 (※종합정밀점검대상 :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로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실시)
점검자	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,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
보고서 제출일	방법 : <u>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 제출</u> (제출용보고서)
벌칙 사항	가.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미이행 시에는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.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의정부소방서장

